

기획조사 06-068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아시아편 -

kotra
해외조사팀

요 약

환경, 안전, 위생 등이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결정요 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 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 및 수출/수입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고 합격해야 수출 및 대만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하며, 신청·검사·보고서·합격증 발급의 순으로 승인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수입상품의 신청은 수입대리상을 통하며,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상품검험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리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업체가 부담하며, 규격 미부합 제품이 대만 시장 내 유통 시 NT 20-200만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강제인증은 소비자보호(안전요건) 등록제도(Consumer Protection(Safety Requirements) Registration Scheme)이다. 동 제도 하에서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45개 품목(예 : 가정용 컴퓨터시스템, 가전제품 등)은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안전검사당국인 '생산성 표준청(SPRING Singapore)'에 등록된 이후에야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하다. 한편 인증취득 신청자는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

등록비는 모델당 294 싱가포르 달러,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주이다.

중국의 경우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차량 및 안전제품, 의료기기 등 159개(2006.7월 기준) 품목군을 대상으로 국내제품, 수입품, 수출품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운영 중이다. 동 제도의 기본 절차는 인증 신청, 샘플 테스트, 초기 공장 심사, 인증결과 평가 및 비준, 인증 획득 후 감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증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S'는 안전, 'EMC'는 전자파적합성, 'F'는 소방기기, 'S+E'는 안전과 전자를 의미한다. CCC 인증비용 기준은 통일되어 있는 바, 신청비는 600위엔, 등록비는 800위엔이며, 인증 취득된 인증대상제품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엔(약 1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목 차

I. 머리말 / 1

II. 대만 / 3

III. 싱가포르 / 7

IV. 중국 / 19

V. 시사점 / 30

I. 머리말

- 환경, 안전, 위생 등이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영향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인증이 의무사항일 경우, 취득 불가 시 시장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임.
 - WTO체제 출범 후 각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추세임.
 - 비관세장벽은 크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등의 전통적 분야와 인증, 환경, 문화(audio-visual)정책 등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내정책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해외시장을 5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업체들에게 관련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해당 5개 지역의 조사대상국가
 - 구주 : EU, 독일, 영국, 프랑스
 - 러시아 및 동부유럽 : 러시아, 체코, 폴란드
 - 북미 : 미국, 캐나다
 - 아시아 : 대만, 싱가포르, 중국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 중 본 보고서는 '아시아편'으로, 대만, 싱가포르, 중국의
인증 제도를 살펴봄.1)

1) 일본의 경우 KOTRA 기획조사보고서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06-012)' 참조.

II. 대만

1. 중국국가표준 (CNS : Chinese National Standards)



- 1944년 경제부 중앙표준국(中央標準局; 현재 표준검험국(標準檢驗局))이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공포한 표준
- 총 26항목으로 분류되며, 주관기관이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음.
 - 2006년 8월 기준, 제정 공포된 국가표준은 총 14,032 종임.

2. BSMI 인증 (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 2001년 수정 실시되고 있는 '대만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은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 동 법안에 따라 대만 국내에서 제조, 생산, 가공되는 농업, 공업, 광업상품과 수출 및 수입되는 동 상품은 본 법규에 따라 상품검험을 받아야 함.

- 상품검험이 필요한 상품은 검험국에서 실시하는 규격에 합격해야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가능함.
 - 반드시 검험을 거쳐야 하는 상품은 대만 경제부표준검험국의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음. (<http://www.bsmi.gov.tw/english/> 참조)
 - 이 때 상품번호, 중문명, 영문명이 필요함.
 - 상품검험실시 규격은 중국국가표준(CNS, Chinese National Standards)에 의거함.
 - 상품검험의 집행방식으로는 축비검험(逐批檢驗), 감시사험(監視查驗), 험증등록(驗證登錄) 및 부합성성명(符合性聲明)의 4가지 종류이며, 검험방식(檢驗方式)은 주관기관이 정함.
 - 샘플, 전람용품 등 비매품의 경우 검험을 면하며, 신청조건, 절차 및 관련사항은 표준검험국이 정함.

□ 승인 절차

- 신청 ⇒ 검사 ⇒ 보고서 ⇒ 합격증 발급
- 수입상품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입대리상을 통해 진행됨.
- 신청 시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첨부해야 함.

- 본 규정에 따른 상품검험(商品檢驗), 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에 대해서는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상품검험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업체가 부담함.

□ 미이행 시 제재 사항

- 상품 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미이행 시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함.
-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상품이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입, 수출될 수 없음.
-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혹은 수입, 수출되었을 경우 NT 20만~200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

□ 검험상품 표지규정

제작주체	구분	비고
표준검험국 제작	일반상품	반드시 검험을 거쳐야 하는 상품 품목
업체 자체 제작(經濟部 標準檢驗局 의 규정에 따라)	검험증 등록상품	전기, 소방, 전자, 컴퓨터정보상품, 가스기체, 아기용품, 전동수공구, 개인보호용구 등
	부합성 성명상품(符合性 聲明商品)	컴퓨터부품, 메인보드, 디지털카메라 등
	형식인가 상품	직류전자상품, 컴퓨터정보상품, 가스관, 일회용 및 단순한 라이터
	관리 시스템 인가 상품	시멘트 및 방화도료

III.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대표적 강제인증은 소비자보호 등록제도 (Consumer Protection(Safety Requirements) Registration Scheme)임.

가. 소비자보호(안전요건) 등록제도 개요

- 제도의 성격 : 강제검사제도
 - 안전검사당국(Safety Authority)에 의해 '통제물품 (controlled goods)'으로 지정된 품목은 안전검사를 통과 하여 당국에 등록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함.
 - 국제규격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싱가포르의 '소비자 보호등록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반드시 싱가포르 당국이 인정하는 해외 검사 연구소의 검정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만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가능함.
- 도입(시행) 시기
 - 1991.6.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소비자보호(안전요건) 규정'을 관보에 공시
- 근거규정 및 법규명
 - Consumer Protection (Trade Descriptions and Safety Requirements) Act 18 of 1975

-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2002-2002년이 최신 개정된 내역임.

□ 운영배경 및 목적

- 공산품 사용 시 발생한 몇 건의 사고로 인해 싱가포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검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및 공공장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규제지역 : 싱가포르 전역

□ 대상품목

-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45개 품목(2006.10월 기준)
 - 공기냉각기, 아답터, 기타 오디오 제품, 요리용 레인지(오븐 포함), 커피머신(전기요리냄비 및 스팀보트 포함), LPG 가스 호스, LPG 가스 조절기, LPG 가스 밸브, (고정)장식 등, 가스레인지, 가스용기, 드라이어, 가정용 컴퓨터시스템(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및 악세서리), 하이파이장치(고성능 스테레오), 다리미, 인두기, 커피포트, 레이저 디스크, 전자레인지, 에어컨(가정에 냉각기와 에어컨이 분리되어 있는 것), 믹서, 부르스타, 냉장고, 밥솥, 에어컨(냉각기, 음축기 등 포함), 텔레비전/비디오 재생기, 탁상용/일반 선풍기, 전등, 토스터(석쇠, 굽는 기계, 요리용 철판, 튀김용

냄비 등),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 진공 청소기, 세탁기, 벽면용/천장용 선풍기, 3핀 직사각형 모양의 13암페어 플러그, 플러그로 사용되는 13 암페어 이하 휴즈, 3핀 원형모양의 15 암페어 플러그, 복수회로 아답터, 3핀 휴대용 소켓 콘센트, 휴대용 케이블 감는 틀, 즉석 전기보일러, 전기 물 보일러, 누전 보호장치, 3핀 13암페어 소켓콘센트, 3핀 원형 15암페어 소켓 콘센트, 가전용 전기 벽면 스위치, 형광등 안정기, 조명기구의 절연변압기

□ 주요내용

- 싱가포르에서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판매를 담당하는 당사자(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등)는 각 모델을 안전검사당국인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Spring Singapore)'에 등록시켜야 함.²⁾
- 등록 시 안전검사당국에서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COC)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³⁾
- 통제물품의 각 모델이 안전검사당국에 등록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을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음.

나. 주관기관

□ 기관명 : 싱가포르 생산성 표준청(Spring;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2) 현재 생산성 표준청이 안전검사 주관당국임.

3) CAB (Local) : 안전검사당국에 의해 공인된 싱가포르 내의 적합성 평가기관, CAB (Foreign MRA) : 싱가포르와 상호인증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적합성 평가기관.

□ 연락처

- 주소 : SPRING Singapore, Consumer Product Safety Department, 2 Bukit Merah Central, Podium Block 5th Storey, Singapore 159835
- 전화 : (65) 1800-773-3163
- 팩스 : (65) 6278-9885
- 이메일 : enquiry@safety.org.sg
- 인터넷 홈페이지 : www.spring.gov.sg(소비자보호제도 안내 사이트 : www.safety.org.sg)

□ 기관의 성격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

- SPRING Singapore는 국가생산성청(National Productivity Board)과 싱가포르 표준·산업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 SISIR)가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임.
- 2002.4.1일부로 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SPSB)에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되었음.

□ 주요 기능

- 소비자보호제도 집행

- 업계의 생산성 및 품질 개선 촉진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 기술 · 인력개발 지원

다. 적합성 평가기관(Conformity Assessment Bodies, CAB)

1)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명칭 : PSB Corporation Pte Ltd
 - 주소 : No. 1 Science Park Drive, Singapore 118221
 - 담당자 : Ms Tan Chiew Wan / Vice President
 - 전화 : (65) 6772-9617 / 6885-1271
 - 팩스 : (65) 6775-9725
 - 이메일 : enquiries@psbcorp.com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sbcorp.com
 - 주요업무 : 제품 인증 및 안전검사 증명서(COC) 발급
- ##### 2) 테스트연구소 (Testing Laboratories)
- 안전검사당국이 관련 기관을 물색 중임.

주요 업무 : 제품 테스트 및 test report 발급

3)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뉴질랜드, 홍콩, 대만에 있으며, 국내에는 없음.

평가기관 리스트는 웹사이트(www.safety.org.sg) 참조

※ 안전검사당국에서 공인한 적합성 평가기관의 최근 자료는
관련 웹사이트(www.safety.org.sg)에서 찾아볼 수 있음.

라. 공인 테스트 연구소 (Recognised Testing Laboratories, RTL)

명칭 : Singapore Electrical Testing Services(Clipsal Industries (Holdings) Limited)

주소 : 97 Pioneer Road, Singapore 639579

담당자 : Mr. Tan Boon Chong(General Manager), Mr. Wong Chee Kian(Laboratory Manager)

전화 : (65) 6415-3274 / 6861-9118

팩스 : (65) 6863-2760

이메일 : BCTan@clipsal.com.sg 및 cheekian@clipsal-tech.com.sg

주요업무 : 제품 테스트 및 test report 발급

- 안전검사당국에서 지정하게 되며, 동 연구소의 테스트 리포트는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인정함.

마. 강제검사 승인절차

-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승인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서류

- 승인 및 등록신청 양식 : COC FORM 01

- COC FORM 02 : Declaration on Use of 3-pin Mains Plug

- COC FORM 03 : Declaration on Using Fixed Wiring in Accordance to CP5/IEC 335-1: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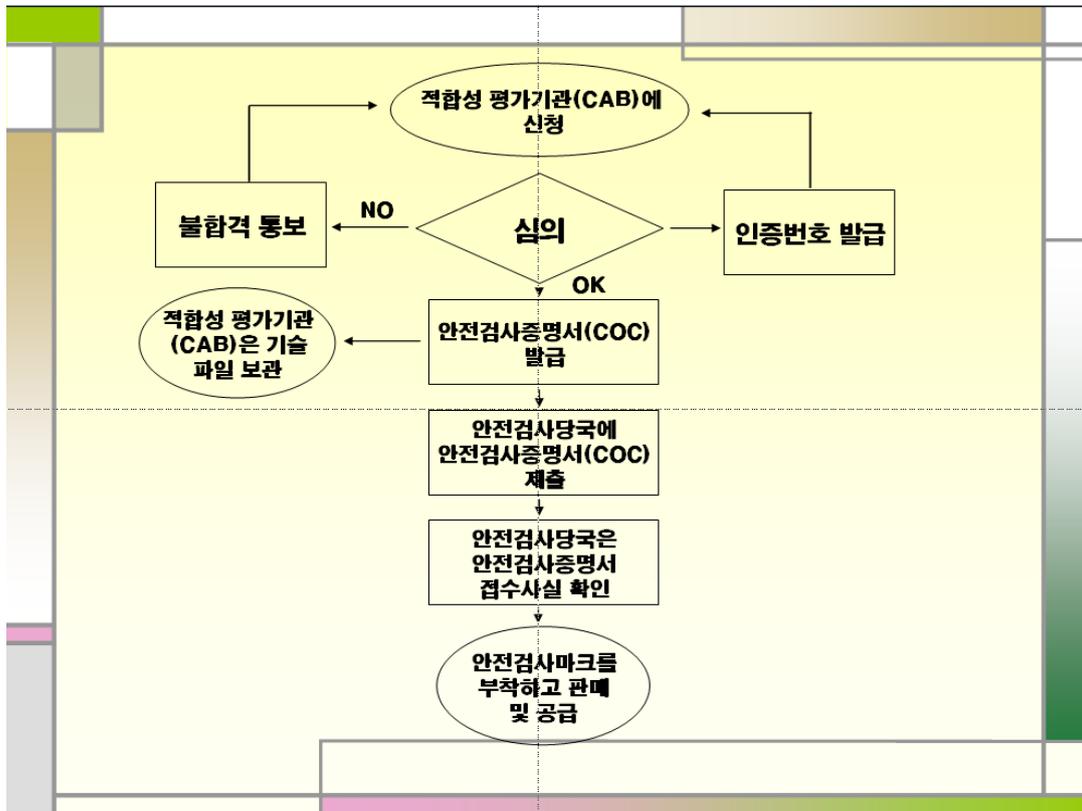
- COC FORM 04 : Declaration for Computer Monitor not Connected Directly to the Mains Power Socket Outlet

- COC FORM 05 : Identity Declaration

- COC FORM 06 : Detachable Power Cord Set not Supplied by Registered Supplier

- Application for Renewal of Certified Controlled Goods

2) 신청에서 승인획득까지의 과정



□ 신청

- 신청인 자격 :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를 가지고 있는 기업
- 신청인(수입업자 · 소매상 · 제조업자)이 상기 기본서류를 작성하여 적합성 평가기관(CAB)에 신청

□ 승인

- 적합성 평가기관(CAB)의 심사 결과, 신청 물품이 사용상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안전검사 증명서(COC)를 발급함.

등록

- 안전검사 증명서(COC)와 등록비를 안전검사당국에 제출하면 안전검사 증명서 접수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절차가 완료됨.

불합격 시 처리내용

- 적합성 평가기관(CAB)이 검사대상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하면, 신청인은 안전요건에 맞추어 제품을 변경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재검사과정을 거쳐야 함.

4) 승인획득 비용 및 소요기간

(2006.10월 기준)

구분	금액	비고
신청/등록비	모델당 싱\$ 294	세금(GST 5%) 미포함
변경비용	모델당 싱\$ 50	세금(GST 5%) 미포함

소요기간

- 신청에서 판정(승인)까지 약 3주 소요

5) 승인확인 방법

'SAFETY MARK' 부착

- 로고와 등록번호 8자리 숫자(예 : 123456-00)로 구성

- 부착방법 : 포장 혹은 제품 자체에 부착

< Safety Mark >



6) 사후관리 내용

- 갱신

-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함.

- 갱신비용 : 모델당 싱\$ 50

- 갱신 유효기간 : 유효기간 3년 연장

- 안전검사당국은 규정대로 승인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동 제품의 승인 만료 즉시 등록을 말소함.

바. 미이행 시 제재사항

- 통제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안전검사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내에서 광고, 거래, 공급이 금지됨.

- 미 이행 시 1만불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징역형을 동시에 받게 됨.

사.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1) 향후 전망

- 소비자 보호제도는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는 공산품 사용 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1993년에 11건이었던 사고를 2001년 0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임.
- 2002년 4월 제도 개정 시, 안전검사를 정부가 아닌 공인기관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행정업무를 경감함.
-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향후 강화 및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2) 대응 방안

- 통제물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통제물품의 등록은 싱가포르 내 등록 사무소(Register Office)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게만 발급되며,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보통 싱가포르의 수입상이 등록하게 되는데 바이어 혹은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신청 가능함.

- 한편 수입상을 바꿀 경우 이전이 안됨을 주의해야 함.
- 상기 제도 이외에 싱가포르에 수출 혹은 현지에서 기업 활동 시 필요한 허가증 혹은 허가내역에 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고
- <https://licences.business.gov.sg>

IV. 중국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Mark임.

1. 제도 개요

- 과거 중국의 제품안전 인증 제도로써 국내 상품에 적용되던 CCEE마크와 수입상품에 적용되던 CCIB마크가 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따라 국무원은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CCC마크를 도입함.
 - 현행의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상품검사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및 《제품인증관리 조례》에 기초하여 ① 검사대상 리스트, ② 기술관련 법규, ③ 마크, ④ 비용 등을 일원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정함.

<통합과정>

<국내제품>	<수입제품>	<수출제품>
- 국가품질기술감독국 (CSBTS) - CCEE(상품안전인증) : 가전제품, 전공부품·설비, 조명설비 등 104개 품목	-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 :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설비 등 107개 품목	-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 (CIQ) - CIQ(수출안전인증) : 주로 전기제품, 완구, 화장품 등 76개 품목



<국내제품, 수입품, 수출품>
- 국가품질감독검침검역총국(AQSIQ) 기존대상품목 : 138개 중 16개 제외, 10개 추가
- CCC마크(중국강제인증마크)

□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가운데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IEC(국제전기표준협회) 및 중국국가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CCC마크를 획득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함.

□ 시행시기

- 2003.5.1일부로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상품은 강제상품인증서를 보유하고 CCC마크를 표시해야만 출고, 수입, 판매가 가능함.

□ 대상품목(22개 분류 총 59개 품목)

- 종래 104개에 달하는 국산품에 대해 상품안전인증을, 107종의 수입제품에 대해 안전품질허가증제도를, 76종 수입제품에 대해 품질허가증제도를 실시했음. (총 138개)
- CCC 대상 리스트에는 의료용 초음파 진단 치료설비 등 16종을 제외하고 건축 안전용 유리 등 10종을 추가하여 19 상품류 132종이 포함되어 있음.

< 2003년 1차 강제인증 시행품목(19개 분류 132개 품목) >

1. 전선케이블 (5종)	1) 전선부품, 2)광업용 고무케이블, 3)교류정격전압 3kV 및 그 이하 철도기관차용 케이블, 4) 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고무절연 케이블, 5)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플라스틱(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2. 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1)기계결합장치(가정용, 공업용), 2)플러그와 콘센트(가정용, 공업용), 3)열퓨즈, 4)소형퓨즈장치의 파이프형태 퓨즈, 5)가정용 고정식 전기스위치, 6)가정용 고정식 전기설비 전기부품의 외장
3. 저압전기장치 (9종)	1)누전차단기, 2)단로기(RCCB, RCBO, MCB 포함), 3)퓨즈장치(두꺼비집), 4)저압스위치(개폐기, 개폐스위치, 퓨즈장치조합전기기구), 5)기타 회로장치차단장치(보호장치류 : 전류제한기, 회로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열차단기, 과전압계전기, 저압기기식 접촉기, 시동전동기), 6)계전기(360V<전압=1000V), 7)기타스위치(전기스위치, 진공스위치, 압력스위치, 접근스위치, 발조작스위치, 열감지스위치, 액체스위치, 버튼식스위치, 한계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온도스위치, 전환스위치, 자동전환스위치, 나이프스위치), 8)기타장치(접촉기, 시동식전동기, 신호램프, 보조개폐기, 주제어기, 교류반도체전동기제어장치와 시동장치), 9)저압폴스위치
4. 소형 전동기 (1종)	1)소형전동기
5. 전동공구(16종)	1) 전기드릴(임팩트드릴 포함), 2) 전기드라이버와 임팩트스패너, 3) 전기그라인더, 4) 포리셔, 5) 원통톱, 6) 전기해머(전동삽 포함), 7)

	<p>전기가위(이중날전기가위, 전기임팩트가위 포함), 8) 트렌치, 9) 지그톱(곡선톱, 칼톱포함), 10) 삼입식시멘트진동기, 11) 전기톱, 12) 전기대패, 13) 전동전지가위, 14) 전동제초기, 15)전기목재프레이즈반, 16)전동석제절삭기(대리석 절삭기 포함)</p>
<p>6. 용접기(15종)</p>	<p>1) 소형교류아크용접기, 2) 교류아크용접기, 3) 직류아크용접기 4) TIG아크용접기, 5) 6) MIG/MAG아크용접기, 7) 서브머지드아크용접기, 8) 등이온아크절단기, 9) 등이온아크용접기, 10) 아크용접변압기전기차단장치, 11) 케이블용접결합장치, 12) 저항용접기, 13) 14) MIG/MAG 용접토치, 15) 전기용접집게</p>
<p>7. 가정용 기기 (18종)</p>	<p>1) 가정용 냉장고와 식품냉동고(유효체적은 500리터 이하로 가정용 냉동식품 저장실이 있는 냉장고 혹은 없는 냉장고, 냉동식품 저장실과 식품냉동식 및 양자 결합형 냉장고), 2) 선풍기(일방향 교류와 직류의 가정용 선풍기), 3) 에어컨(냉각 시 시간당 21000킬로칼로리를 넘지않는 가정용 에어컨), 4) 전동기-압축기[입력 5000W이하의 가정용 에어컨과 냉각장치의 폐쇄식(완전폐쇄형, 반폐쇄형) 전동기-압축기], 5) 가정용 세탁기(급수가열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세탁기, 탈수장치 혹은 건조장치를 장착한 세탁기), 6) 전기온수기(물을 비등점 이하까지 가열하는 보온식과 급속가열식 전기온수기), 7) 실내난방기(가정용 복사식 난방기구, 장판형 난방기구, 액체주입식 난방기구, 선풍기식 난방기구, 대류식 난방기구, 파이프형 난방기구), 8) 진공청소기(마른먼지와 물기 제거 기능을 갖추고 정류전동기 혹은 직류전동기에 의해 구동 되는 진공청소기) 9) 피부 모발 보호 제품[인간(혹은 동물)은 피부와 모발을 보호하고 전기가열 부품이 장착된 제품], 10) 전기다리미(가정용 건조 다리미와 스팀 다리미), 11) 전자오븐(전자파에너지 가열기능을 지닌 가정용 오븐으로 하나 내지는 여러 개의 전자가열부품을 되어 있는 것), 12) 전기오븐(정격체적 10리터 미만의 가정용 전기오븐, 토스터기, 와플기와 유사제품), 13) 전동식품가공제품(가정용 전동식품가공용품과 유사용도의 다기능 식품가공용품), 14) 전자레인지(300MHz 이상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I.S.M주파수대 전자파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과 음료를 가열하는 주방기기로서 착색과 증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15) 전기스토브와 같은 음식가열조리용품(가정용전기스토브, 분리식 고정스토브, 데스크형 전자스토브, 전자스토브의 전열기, 틀, 판, 내장형 스토브와 틀), 16) 환풍기(가정용 조</p>

	리기구와 오븐상단에 설치되고 팬, 램프, 모뎀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 주방의 연기를 흡입 배출하는 주방용 기기), 17) 전기포트와 냉온수기, 18) 기밥솥(전열기로 가열하는 자동 보온식 혹은 타이머식 전기밥솥)
8. 음향 영상설비 (방송용과 자동차 용 음향설비는 미포함) (16종)	1) 500W이하 출력의 모노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춘 음향 기기, 2) 가청주파수증폭기, 3) 음향조정장치, 4) 각종 방송 수신용 라디오, 5) 여러 형식의 영상 제작, 방송 및 처리장비(카세트테이프, CD 등을 포함) 및 오디오 비디오세트, 6)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위한 전원어댑터, 7) 각종 영상전달 칼라TV수신기, 8) 감식장비(자동차용 TV수신기 제외), 9) 흑백 TV수신기 및 기타 모노톤 TV수신기, 10) 브라운관, 11) 비디오 플레이어, 12) 위성 TV방송수신기, 13) 전자피아노, 14) 무선증폭기, 15) 음성, 전자신호케이블 분할시스템 장비와 부품
9. 정보기술 장비 (12종)	1) 마이크로 컴퓨터, 2) 휴대용 컴퓨터, 3) 컴퓨터 연결 모니터, 4) 컴퓨터 연결 프린터, 5) 다용도 프린터 복사기, 6) 스캐너, 7) 컴퓨터 내장형 전원 및 전원 어댑터 충전기, 8) 컴퓨터게임기, 9) 학습기, 10) 복사기, 11) 서버, 12) 금융 및 무역 결재 전자장치
10. 조명장비(전 압이 36V 이하인 조명장비는 제 외) (2종)	1) 조명기기, 2) 안정기
11. 전자통신 단 말기 (9종)	1) 모뎀(음성모뎀, 기본모뎀, DSL모뎀, 내장카드), 2) 팩스(팩스, 전화음성팩스카드, 다기능팩스), 3) 유선전화기(유선전화, 발신자표시전화, 카드전화, 녹음기능전화, 동전투입전화, 지능형전화, 4) IC카드 공중전화, 핸드프리전화, 디지털전화, 전화부대장비), 5) 무선전화(아날로그무선전화, 디지털무선전화), 6) 공용전화(공용전화, 대표전화), 7) 휴대폰[아날로그이동전화, GSM 디지털 이동단말기(핸드폰 및 기타단말기), CDMA디지털 단말기(핸드폰 및 기타 단말기)], 8) ISDN단말기[네트워크단말기(NT1, NT1+), 단말기어댑터(카드) TA], 9) 데이터단말기(저장전송용 팩스/음성카드, POS단말기, 인터페이스전화기, 정보검색단말기, 기타 멀티미디어 단말기)
12. 차량 및 안전 제품(4종)	1) 자동차(국도와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M,N,O류 차량), 2) 오토바이, 3) 4)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자동차 안전벨트, 오토바이 엔진)
13. 차량타이어	1) 2)자동차 타이어[자가용 차량 타이어(오션형 타이어, 사선그루브

(3종)	형 타이어), 운반용 차량 타이어(소형차량 타이어, 경형차량 타이어, 중형/대형운반용 차량 타이어), 3) 오토바이용 타이어[오토바이용 타이어(넘버시리즈, 공식제품시리즈, 경형시리즈, 소형제품시리즈)]
14. 안전유리(3종)	1) 자동차 안전유리(A형접유리, B형접유리, 부분강화유리, 강화유리), 2)건물 안전유리(접유리, 강화유리), 3)철도 차량용 안전유리(접유리, 강화유리, 안전중공유리)
15. 농기계(1종)	1) 식물보호기계(역방향 분무기, 역방향산분기, 역방향 미스트터스터)
16. 라텍스 제품(1종)	1) 콘돔
17. 의료기기(7종)	1) 의료용 X선 진단기, 2) 혈액검사기, 3) 중공섬유분석기, 4) 혈액정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 장치, 5) 심전도, 6) 이식용 심장박동기, 7) 인공심폐기
18. 소방제품(3종)	1) 화재경보장치(화재연기감지 경보탐측기, 화재온도 감지 경보탐측기, 화재경보 제어기, 소방자동제어장치, 화재경보수동벨), 2) 소방튜브, 3) 분사점 화장기(물분사기, 습격경보밸브, 수류지시장치, 소방압력스위치)
19. 안전기술 예방설비(1종)	1) 침입자탐지기(실내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적외선 침입자 탐지기, 실내 적외선 탐지기, 초음파 적외선 복합 탐지기)

자료 : www.cqc.com.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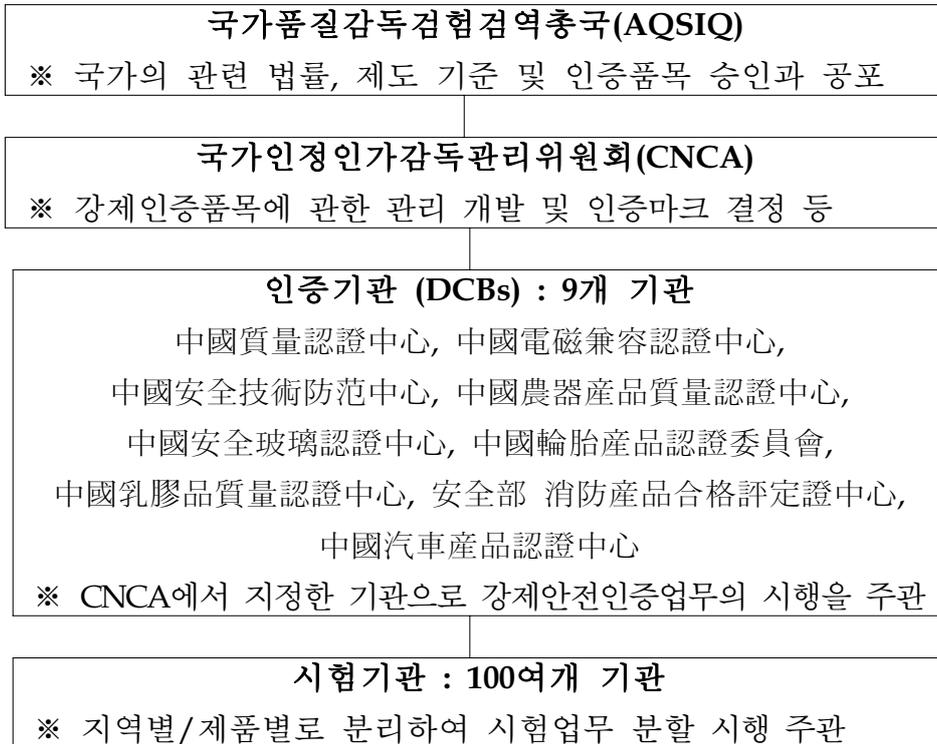
- 2006년 7월 말 전선 및 케이블, 전기스위치, 가정용 전기 제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전동공구, 의료기기, 완구류, 소방설비,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을 지정함.

<추가 지정된 주요품목과 품목별 강제인증 시행일지>

분류	세부 품목	강제인증 적용시기
가정용 인테리어 제품(Home Decor Products)	목재용도료, 타일, 콘크리트 혼합물 3개 품목	2005.8.1일부터
안전보호장비(Safety Protection Products)	감지기, 방범경보기, 차량 도난방지, 금고 도난방지 4개 품목	2005.10.1일부터
자동차 부품(Automotive Accessories)	주행기록계, 연료탱크, 백미러 등 12개 품목	2006.12.1일부터
완구류(Toy Products)	어린이용 자동차(자전거 등 포함), 플라스틱 완구, 금속완구 등 6개 품목	2007.6.1일부터
농업용 기계(Agricultural Machines)	농업용 트랙터 등 2개 품목	2008.5.1일부터

자료 : www.cqc.com.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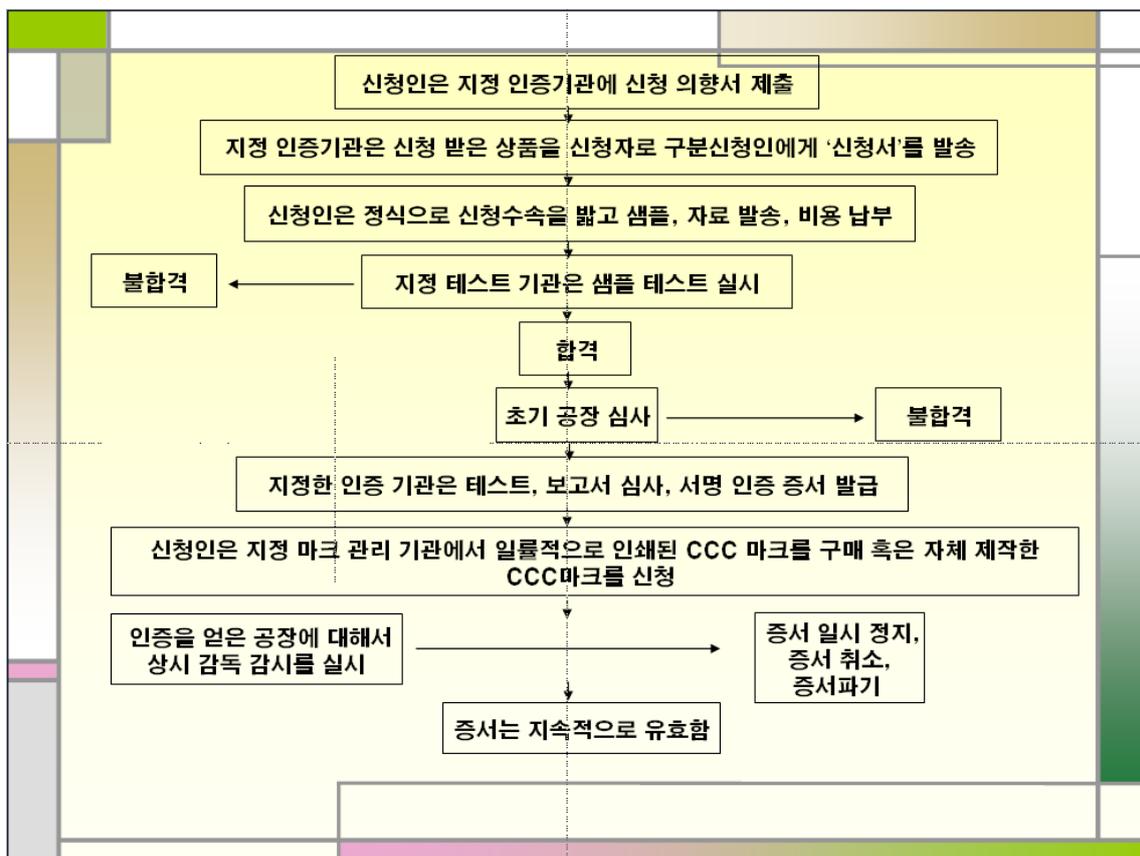
2. 조직체계



3. 강제인증 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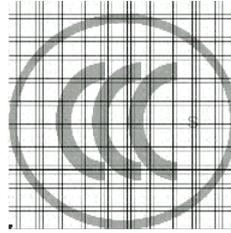
- 강제안전인증제도의 기본 절차는 인증 신청 및 수리 ⇒ 샘플 테스트 ⇒ 초기 공장 심사 ⇒ 인증결과 평가 및 비준 ⇒ 인증 획득 후의 감독 임.

<세부 인증 처리 절차>



- 인증취득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되며, CB Reporter 제출 시 인증취득기간이 단축됨.

4. 인증 마크 표시 및 비용



- 인증 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 "S"는 안전, "EMC"은 전자
과적합성, "F"는 소방기기, "S+E"는 안전과 전자를 의미함.

- CCC 인증비용 기준을 통일
 - 신청비는 600위엔(중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번역비
추가, 단 1,000엔을 상회하지 못함)

 - 회사명칭 혹은 주소 변경, 신청인 변경, 상표 변경, 인증
획득 제품과 동일한 유니트 내에서의 모델명 및 상표 추
가 등록 신청 시 신청비를 받지 않음.

 - 제품 테스트비(형식시험비)는 실제 테스트 내용에 따라 테
스트 보고서 발행 시 청구함.

 - 비준, 등록비 : 800위엔

 - 사후 심사비 : 초기 공장심사비용의 25%를 상회하지 못함.

 - 라벨 사용 승인비(인쇄 등의 경우)는 첫 해 900위엔, 두
번째 해부터 600위엔임.

5. 미이행 시 제재사항

- 인증대상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인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30,000위엔(약 3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 한편 인증 취득된 인증대상제품이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엔(약 1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함.

6. 유의사항

-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자가 인증마크의 사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CNCA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가 제3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제3자는 위탁 증명서, 신청서, 승인서 사본을 CNCA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가 서신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서와 승인서 사본을 CNCA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마크사용의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사용에 대한 정확한 파일을 유지함.
 - 인증마크 부착 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보장함.

- 제품의 광고 또는 인쇄물 등에서 인증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함.
- 해당기관의 승인마크 사용에 대한 감사나 검사에 동의함.

□ 인증마크 관련 금지행위 (www.cqc.com.cn 참조)

- 인증마크의 위조, 변형, 거래 또는 이전
- 승인 없는 인증마크 보유
- 다른 사람 명의의 인증마크 사용
- 기타 동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

VI. 시사점

1. 대만

- 상품의 안전성,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 기술법규 및 표준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인증이 실시되고 있음.
- BSMI인증의 대상상품은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에 직접 문의하거나 경제부 표준검험국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이 때 상품번호, 중문명, 영문명이 필요함), 대만 내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 시 반드시 취득되어야 함.
(<http://www.bsmi.gov.tw/english>)
- 승인절차는 신청 ⇒ 검사 ⇒ 보고서 ⇒ 합격증 발급순으로 구성되며, 수입상품의 신청은 수입대리상을 통해 진행되고, 신청서, 영리사업등기증명서, 회사등기증명서, 신분증, 상품별 요구서류 등을 구비해야 함.
- 상품검험(商品檢驗), 검사, 평가, 등록, 자격발행 등 각 절차 단계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상품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미 이행 시 혹은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상품검험 불합격에 따른 창고비, 운송비, 소독 및 개선관련 처리비용은 생산업체 혹은 수출입업체가 부담함.
- 더 나아가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이나 수입, 수출되었을 경우 NT 20-200만의 벌금을 지불하게 됨.

2. 싱가포르

- ‘소비자보호(안전요건) 등록제도’ 하에 통제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검사 주관당국인 ‘생산성 표준청(SPRING Singapore)’이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ies)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통제품목 : 2006.10월 기준 45개 품목,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 적합성 평가기관(CAB)은 안전검사당국에 의해 공인된 싱가포르 내 기관이나 싱가포르와 상호인증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의 기관임. (現 국내에는 없음)
- 안전검사 합격 후 적합성 평가기관(CAB)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등록비(모델당 294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한 후, ‘생산성 표준청(SPRING Singapore)’에 등록 신청을 함. (승인까지 약 3주 소요)

- 한편 '등록 신청인은 싱가포르 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므로, 싱가포르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업체는 싱가포르 수입업자, 소매상, 제조업자를 통해 등록 가능함.
- 등록되면 'Safety Mark'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유효하므로 만료되기 전에 갱신 하는 것이 필요함. (갱신비용은 모델당 50 싱가포르 달러)

3. 중국

- 중국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마크는 국내 제품에 적용되던 CCEE(상품안전인증), CCIB(수입상품 안전품질인증), CIQ(수출안전인증)를 통합한 제도로써, 중국 시장 내 유통되는 내외국 상품 및 해외로 수출되는 자국품 모두에 적용됨.
- 대상품목은 2006.7월말 기준, 전선 및 케이블, 전기 스위치, 가정용 전기 제품, 정보기술장비, 영상음향설비, 조명장비, 자동차 및 부품, 타이어, 전동공구, 의료기기, 완구류, 소방설비, 농기계 등 22개 분류에 해당하는 159개 품목임.
- 동 대상품목들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업체들은 중국 내 인증기관(DCBs)에 샘플 및 자료 발송, 비용 납부(600위엔)를 통하여 인증취득 신청을 하고, 샘플 테스트 및 초기 공장심사에서 합격하면 CCC인증을 취득하게 됨. (등록비 800위엔)
- 이 때 인증 취득 시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됨.

- CCC인증은 크게 'S(안전)', 'EMC(전자파적합성)', 'F(소방기기)', 'S+E(안전과 전자)'로 구분 되는데, 인증 미 취득 시 3만엔(약 390만원), 인증 취득 제품이 마크 미 부착 시 1만엔(약 13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유의가 요구됨.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06-06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2006.10
06-061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2006.10
06-062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유럽편	2006.11
06-063	2006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6.11
06-064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6.11
06-065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11
06-066	Q&A로 살펴보는 EU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2006.11
06-067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유럽편	2006.11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06-029	한 미 FTA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2006.11

□ 산업페이퍼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06-004	알제리 투자진출 설명회	2006.11
06-005	요르단 투자환경 설명회	2006.11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작 성 자

- ◆ 박한진 차장 (상하이 무역관)
- ◆ 김운태 과장 (타이베이 무역관)
- ◆ 김현아 과장 (싱가포르 무역관)
- ◆ 신순재 과장 (해외조사팀)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아시아편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